

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6. 3. 8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6. 3. 9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6. 3. 17(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- 마. 의안번호 : 제2006-8호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종 연)

가. 제안이유

- 건축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·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·제빙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제설·제빙 책임범위 등을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 책임 및 책임순위, 책임범위를 규정함(안 제3조 ~ 안 제5조)
 -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·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
 - 소유자 거주 시와 비거주 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함
 - 보도는 전체구간,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함

- 제설·제빙작업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함(안 제6조~안 제7조).
 - 제설·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, 단 야간 적설 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함
 -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함
- 제설·제빙작업의 도구 비치·관리(안 제8조).
 - 겨울철 재난대책기간 동안 제설·제빙작업 도구 비치·관리토록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 종 목)

- 본 조례안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7조(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) 제2항에서 위임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·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경상남도의 표준조례(안)에 근거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형평성 있게 제정됨.
- 조례내용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·제빙 책임의무 명시화 및 책임 순위, 책임범위, 그리고 작업의 시기, 방법, 도구의 비치의무 등 법령으로서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며,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그러나 제설·제빙의 책임과 순위, 범위, 시기 등 각종 규제 및 의무사항만 규정되어 있고,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수단이 없어 법 규범으로서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주민홍보 등 대책강구가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생략

5. 토론요지

○ 생략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